

보도시점

전체회의 의결시

배포

2023.11.30.(목)

#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

- 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`23.11.30.(목)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  - \*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주세법, 인지세법, 교육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세징수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,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- □ 정부가 `23.9.1.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소득세법

-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
  - \* (현행) 소득금액 3,000만원 → (개정) 5,000만원(시행령 개정)
- ② 고가주택(기준시가 12억원 초과)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(2026년부터 시행)
  - \* (현행)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(개정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
- 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
  - \* (현행)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
- ❹ 자녀세액공제액 확대\*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
  - \* (첫째/둘째/셋째 이상) (현행) 15/15/30만원 → (개정) 15/20/30만원
- **5**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
  - \* (현행) '24.1.1. → (개정) '26.1.1.

- 6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⋅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\*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
  - \* (정부안) Max(일반 공제율, 1세대 1주택 공제율)
    - → (수정) 보유기간 공제율(건물 + 1세대 1주택) + 거주기간 공제율(1세대 1주택)

#### 법인세법

1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·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(5%)

#### 상속세 및 증여세법

-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\* 신설
  - \*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
  - 단,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**통합 공제한도**는 **1억원**으로 설정
- ❷ 공익법인이 지출의무(출연재산가액의 1%)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% 가산세 부과
  - \* (현행) 미달지출액의 10% 가산세 + 주식 5% 초과분 증여세
    - → (정부안) 미달지출액의 100% 가산세 → (수정) 미달지출액의 200% 가산세
- 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
  - \* (현행) 5년 → (정부안) 20년 → (수정) 15년

#### 조세특례제한법

-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\* (현행) '23.12.31. → (정부안) '28.12.31. → (수정) '26.12.31.
-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(10%)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\* (현행) 60억원 → (정부안) 300억원 → (수정) 120억원
- ③ 조합(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)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\* \* (현행) 출자금 1,000만원 이하 → (개정) 출자금 2,000만원 이하

- ◆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\*
  - \* (현행) 월 40만원 → (개정) 월 55만원('25.1.1.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)
- **5**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\*
  - \*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(840만원)의 예외 적용
-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  - \* 소득기준: (현행) 총급여 7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) → (개정) 총급여 8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) 한도액: (현행) 연 월세액 750만원 → (개정) 연 월세액 1,000만원
- 7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
  - 기회발전특구를 **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**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**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** 특례 적용
  -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·법인세 감면(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) 신설
  - **수도권 기업**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**특구로 이전**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**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**
  -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9% 분리과세 적용
- ③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
- ③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\* (현행) '24.1.1.~'25.12.31. → (개정) '26.1.1.~'27.12.31.
- 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\* (정부안)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→ (수정) 법률로 상향 입법
- ❷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・법인세 감면(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) 신설

- ❸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\*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
  - \*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%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% 공제(한도 100만원)
- 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\*
  - \* 적용기한 : (현행) '25.12.31. → (수정) 폐지

####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- **1**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**주세포탈의 기준금액\* 추가 상향** 
  - \* 탁 주: (현행) 50만원 → (정부안) 100만원 → (수정) 500만원
  - \* 기타 발효주류: (현행) 200만원 → (정부안) 400만원 → (수정) 500만원

#### 국세기본법

-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
- ❷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\* 보완
  - \* (정부안)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→ (수정)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

#### 국세징수법

-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「전자증권법」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
- ②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
- ③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 에게도 공매보증 반환

#### 관세법

-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\*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
  - \* <sup>①</sup>관세사·관세법인·통관취급법인등, <sup>②</sup>세무사·세무법인, <sup>③</sup>세무대리 가능 회계사 ·변호사, <sup>④</sup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
- ② 보세운송업자 등<sup>\*</sup>에 대한 행정제재(관세청 고시에 규정) 위임근거 마련
  - \* 보세운송업자, 화물운송주선업자, 하역업자, 물품 공급업자 등
- ③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
- ◆ 직무집행 거부・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\*
  - \* (정부안) 2천만원 이하 → (수정) 5천만원 이하
- 6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
- ❸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\*
  - \* (정부안)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$\to$  (수정) 전자문서중계사업자
- 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- 소득세제(4211~3, 4215~4218), 금융세제(4231, 4233, 4236), 법인세제(4221~4, 4226), 상속증여세·양도소득세(4311~4, 4316~8), 부가가치세제(4321~3, 4326), 주세(4331, 4333, 4336), 국제조세(4651~2, 4656, 4661~4, 4666), 관세(4411~3, 4416~8),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(4151~2)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(4333), 조세특례(4131~3, 4136, 4141~2),

담당 부서세제실책임자과 장 이재면 044-215-4110조세정책과담당자서기관 김현수 sxx9439@korea.kr

# 참 고

###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

### 소득세법

① **양식업 소득**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**분리**, 비과세 한도 상향 (소득법 §12)

현 행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□ 사업소득 비과세	□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
○ 농어가부업소득( <b>양어소득포함</b> )	○ 농어가부업소득( <b>양어소득 삭제</b> )
* 비과세 한도(시행령) <b>3,000만원</b>	
ㅇ 어로어업 소득	<ul><li>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</li></ul>
	* 비과세 한도(시행령 개정) <b>5,000만원</b>

- 〈 개정이유 〉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
- 〈 시행시기 〉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- ② 고가주택(기준시가 12억원 초과) **2주택 보유자**의 간주임대료 과세(소득법 §25)

현 행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□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	□ 과세범위 확대
○ (대상)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· 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	<ul> <li>고가주택*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('26년부터 시행)</li> <li>* 기준시가 12억원 초과</li> </ul>

- **〈 개정이유 〉** 과세형평 제고
- 〈 시행시기 〉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

③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현행 유지(소득법 §34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	□ 현행 유지
○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<b>자원</b>	<u>※ 현행 제도</u>
봉사용역	o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에 한하여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
○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 <sup>*</sup> 에	
제공한 자원봉사용역	
* 국가, 지자체, 학교, 병원, 전문모금기관	

###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
4 자녀세액공제 확대(소득법 §59의2)

현 행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□ 자녀세액공제	□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
○ <b>적용대상</b> 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<b>자녀</b>	○ <b>적용대상</b> 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<b>자녀 및 손자녀</b>
○ 공제세액(연간)	○ 공제세액(연간)
- 1명 : 15만원 - 2명 : 30만원 - 3명 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- 1명 : 15만원 - 2명 : <b>35만원</b> - 3명 : <b>35만원</b>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

〈 개정이유 〉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

〈시행시기 〉 (적용대상) '24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(공제액)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

-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
  -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(소득법 §164의3)

<b>현 행</b> 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<ul><li>□ 간이지급명세서* 제출</li><li>* 소득자 인적사항, 지급금액 등 기재</li></ul>	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
○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: 매월	ㅇ (좌 동)
○ 상용근로소득 : 매 반기 → 매월('24년 시행)	○ <b>상용근로소득</b> : 매 반기 → 매월('26년 시행)
<ul><li>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: 매월('24년 시행)</li></ul>	○ (좌 동)
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	

- 〈 개정이유 〉 「소득기반 고용보험」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
  -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(소득법 §81의11, 법인법 §75의7)

현 행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<b>지연제출 가산세</b> (0.125%) 적용요건	□ 시행시기 유예
<ul> <li>○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</li> <li>→ 1개월 내 제출('24년 시행)</li> </ul>	<ul> <li>○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</li> <li>→ 1개월 내 제출('26년 시행)</li> </ul>
□ 불분명금액이 5%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('24년 시행)	□ 시행시기 유예("26년 시행)
□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	□ 대상기간 조정
○ <b>′24.1.1.~12.31.</b> 에 지급하는 소득	○ <b>′26.1.1.~12.31</b> .에 지급하는 소득
-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'24.1.1.~'24.12.31.에 지급하는 소득	-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'26.1.1.~'27.12.31.에 지급하는 소득

〈 개정이유 〉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⑥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(소득법 §95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용도변경(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)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	□ 계산방법 변경
○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[Max( <b>1)</b> , <b>2</b> )]	○ 각 용도기간별 보유·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(① + ②)
● 전체 보유기간*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* 전체 보유기간 : 취득일~양도일	<ul> <li>● (보유기간 공제율*) 비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+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</li> <li>* 최대 40% 적용</li> </ul>
② '용도변경일~양도일'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	② (거주기간 공제율) 주택 거주 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

-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- < 시행시기 > '25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# 법인세법

①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(법인법 §18의4, §57⑤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	$\cdot$ , , , $\cdot$ $\cdot$ $\cdot$ $\cdot$ $\cdot$ $\cdot$
○ 지분율 10% 이상	○ (좌 동)
-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% 이상	-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% 이상
<ul><li>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</li></ul>	ㅇ (좌 동)

# 상속세 및 증여세법

①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(상증법 §53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혼인 증여재산 공제	
<ul><li>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</li><li>중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</li></ul>	
❶ (증여자) 직계존속	(좌 동)
❷ (공제한도) 1억원	
❸ (증여일) 혼인신고일 이전 2년 +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(총 4년)	
<신 설>	□ 출산 증여재산 공제
	<ul><li>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</li><li>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</li></ul>
	❶ (증여자) 직계존속
	❷ (공제한도) 1억원
	<ul><li>❸ (증여일) 자녀의 출생일*부터</li><li>2년 이내</li></ul>
	*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
<신 설>	□ 통합 공제한도
	<ul><li>혼인 증여재산 공제</li><li>+ 출산 증여재산 공제: 1억원</li></ul>

< 수정이유 > 혼인·출산 지원 확대

**〈 시행시기 〉** '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②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(상증법 §78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	□ 제재 수준 변경
○ 위반시 제재	○ 위반시 제재
<ul><li>주식 5% 초과 보유 공익법인</li><li>: 미달지출액의 100% 가산세</li></ul>	<ul><li>주식 5% 초과 보유 공익법인</li><li>: 미달지출액의 200% 가산세</li></ul>
<ul><li>주식 5% 이하 보유 공익법인</li><li>: 미달지출액의 10% 가산세</li></ul>	- (좌 동)

-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- 〈시행시기 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   (단, '23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'미달지출액의 10% 가산세 + 주식 5% 초과분 증여세' 또는 '미달지출액의 200% 가산세' 중 선택 가능)

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(상증법§71, 조특법 §30의6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	□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
<ul> <li>(대상) 18세 이상 거주자가</li> <li>60세 이상 부모로부터</li> <li>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</li> </ul>	
○ (특례한도)	
- 업력 10년 이상: 300억원	ㅇ (좌 동)
- 업력 20년 이상: 400억원	
- 업력 30년 이상: 600억원	
○ (기본공제) 10억원	
○ (세율) 10%	
- 단, <b>300억원</b> 초과분은 20%	- 단, <b>120억원</b> 초과분은 20%
○ (연부연납 기간) 20년	○ (연부연납 기간) 15년
<ul> <li>(신청 기간) 증여받은 날이</li> <li>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</li> <li>이내</li> </ul>	ㅇ (좌 동)

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
(시행시기 > (저율과세 구간 확대) '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 (연부연납 기간 확대) '24.1.1.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
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### 조세특례제한법

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8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	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○ (감면율) 10년간 50%	ㅇ (현행과 같음)
ㅇ (적용기한) '28.12.31.	o '26.12.31.

###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(조특법 §18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	□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<ul> <li>(내용) 19% 단일세율* 적용</li> <li>* 종합소득세율(6~45%) 선택 가능</li> <li>- 비과세·감면, 소득공제 및 세 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</li> </ul>	ㅇ (좌 동)
-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*	
* 외국인근로자가 '23.12.31.까지 제공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 외중(소득령 부칙)	
<ul><li>(적용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</li></ul>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○ <b>′26.12.31</b> .

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(상증법§71, 조특법 §30의6)

정 부 안	수 정 안	
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	□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	
<ul> <li>(대상) 18세 이상 거주자가</li> <li>60세 이상 부모로부터</li> <li>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</li> </ul>		
○ (특례한도)		
- 업력 10년 이상: 300억원	ㅇ (좌 동)	
- 업력 20년 이상: 400억원		
- 업력 30년 이상: 600억원		
○ (기본공제) 10억원		
○ (세율) 10%		
- 단, <b>300억원</b> 초과분은 20%	- 단, <b>120억원</b> 초과분은 20%	
○ (연부연납 기간) 20년	○ (연부연납 기간) 15년	
○ (신청 기간) 증여받은 날이 ○ (좌 동)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		

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
(시행시기 > (저율과세 구간 확대) '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 (연부연납 기간 확대) '24.1.1.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
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(조특법 §88의5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에 대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	□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
<ul> <li>(대상자) 조합 등* 조합원</li> <li>회원 및 준조합원</li> <li>*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(조특법 시행령)</li> </ul>	○ (좌 동)
<ul><li>(대상소득) 예탁금・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・배당소득</li><li>- 예탁금 3천만원 한도</li></ul>	
- 출자금 1천만원 한도	- 출자금 2천만원 한도
○ (세율 및 적용기한)	ㅇ (좌 동)
소득발생 '25.12.31. '26.1.1.~ '27.1.1. 기간 까지 '26.12.31. 부터	
<b>감면</b> 비과세 5% 9% 분리과세 분리과세	

-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- 〈 시행시기 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- 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(조특법 §91의19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	□ 적용기한 연장
<ul><li>(가입요건)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</li></ul>	○ ○ (좌 동)
○ <b>(적립기간)</b>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(최대 24개월)	
○ <b>(적립한도)</b> 월 40만원	ㅇ 월 55만원('25.1.1.부터)
○ <b>(적용기한)</b> '26.12.31.까지 가입분	ㅇ (좌 동)

- 〈 수정이유 〉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
- 〈시행시기〉 '25.1.1.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

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(조특법 §91의22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	
□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	□ 납입한도 완화	
○ (가입요건) <sup>●</sup> 만 19~34세 <sup>②</sup> 총급여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		
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		
○ ( <del>운용</del> 가능재산) 예·적금, 회사채, 국내상장주식 등	ㅇ (좌 동)	
※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		
○ (세제지원)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		
○ <b>(납입한도)</b> 연 840만원	○ (좌 동)	
<단서 신설>	<ul> <li>다만, 다음요건 충족 시</li> <li>최초 2년간 1,680만원 이내</li> <li>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</li> </ul>	
	<ul> <li>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</li> </ul>	
	▪ <b>가입후 30일 내</b>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 <b>0% 이상 납입</b>	
○ <b>(적용기한)</b> '25.12.31.까지 가입분	ㅇ (좌 동)	

- 〈 수정이유 〉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
- 〈시행시기 〉 '24.1.1.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(조특법 §95의2, §122의3)

현 행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□ 월세 세액공제	□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
○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	○ <b>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</b>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시업자 등
○ (공제율) 월세액의 15%·17%* 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	○ (좌 동)
○ (공제한도) 750만원	ㅇ 1,000만원

- 〈 개정이유 〉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- < 적용시기 > '24.1.1.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

- 图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
  -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(조특법 §99조의4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	
□ 일반주택, 농어촌주택을 각 1채	□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	
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		
양도 시 비과세		
○ (대상 농어촌주택) <b>①&amp;②&amp;③</b>	○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	
● '읍·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	❶ '기회발전특구' 포함	
시의 동'*에 소재	(읍·면·동 소재 여부, 도시지역,	
* 수도권, 도시지역, 조정대상지역, 부동산	조정대상지역, 부동산거래 허가구역,	
거래 허가구역, 관광단지 등 제외	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)	
<b>2</b>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		
<b>3억원 이하</b> (한옥 4억원 이하)		
<b>○</b> (00 0 0) (0 <b>F</b> 10 0) 7) 7) 5) <b>□</b>		
❸ '03.8월~'25.12월간 취득	(좌 동)	
○ (요건) 농어촌주택 3년 이상		
보유 & 농어촌주택 취득 전		
보유한 일반주택 양도		

- 〈 수정이유 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- **〈 시행시기 〉** '24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(조특법 §121의33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기회발전특구*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
	*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에 따른 기회발전특구
	○ (대상)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기업
	<ul><li>(감면율)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% + 이후 2년간 50% 소득・법인세 감면</li></ul>
	○ (감면한도)
	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 (청년·서비스업 2,000만원)
	○ (최저한세) 50% 감면기간만 적용
	○ (적용기한) '26.12.31.

- 〈 수정이유 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- 〈 시행시기 〉 '24.1.1.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부터 적용

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121의34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* 내 부동산
	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
	* 인구감소지역·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
	○ (요건) ① & ❷ & ❸
	<b>1</b> 3년 이상(중소기업 2년) 사업 영위
	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
	′26.12.31일까지 양도
	❸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*
	* <sup>①</sup>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<sup>②</sup>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 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
	<ul><li>(과세특례)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</li></ul>

〈 수정이유 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
< 시행시기 > '24.1.1.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121의35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
	<ul> <li>(적용요건)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·입주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*에 10년 이상 투자**</li> </ul>
	* 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**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
	○ (특례내용)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은 10년간 9% 세율로 분리과세
	○ <b>(적용한도)</b> 투자금액 3억원
	○ (적용기한) '25.12.31. 까지 가입분

- 〈 수정이유 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- **〈 시행시기 〉** '24.1.1.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

⑨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(조특법 §99의13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
	<ul> <li>(대상) 내국인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*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</li> <li>*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,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</li> </ul>
	심의·의결한 조치
	○ (특례)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

- 〈 수정이유 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
- 〈 시행시기 〉 '24.1.1.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
- 10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(조특법 §104의5)

현 행(정부안 없음)	개 정 안
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□ 적용기간 유예
<ul> <li>(적용대상)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</li> </ul>	
<ul><li>(공제금액)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</li></ul>	○ (좌 동)
<ul> <li>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(세무회계법인 600만원), 최소공제액 1만원</li> </ul>	
○ (적용기간) '24.1.1. ~ '25.12.31.	° '26.1.1. ~ '27.12.31.

〈 개정이유 〉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1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(조특법 §104의16, 조특령 §104의16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대학*이 수익용 기본재산**	□ 현행 유지
대체취득시 과세특례	<u>※ 현행 제도</u>
* 대학, 산업·교육·전문·방통대 등 **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·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	o (특례내용)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o (대체취득 시한) 1년 o (대상자산 <sup>&lt;시행령&gt;</sup> ) 토지, 건축물
○ (특례내용)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	
○ (대체취득 시한) 2년	
○ (대상자산) ※ 시행령 사항 토지, 건축물, 유가증권	

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(조특법 §104의24, §118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	□ 업종요건 상향입법
<ul> <li>(감면대상)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· 복귀하는 기업</li> </ul>	
○ (감면내용)	
- 소득·법인세 감면	
●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: 7년 100% + 3년 50%	ㅇ (좌 동)
<ul><li>②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: 3년 100% + 2년 50%</li></ul>	
- 관세 감면	
❶ 완전복귀: 5년 100%	
❷ 부분복귀: 5년 50%	
※ (완전복귀) 국외사업장 양도·폐쇄 (부분복귀) 국외사업장 축소·유지	
○ (업종요건) 대통령령으로 위임	ㅇ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
	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
	-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 <sup>*</sup> 에서 <b>업종 유사성 확인</b>
	*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

13 **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**(조특법 §121의17, §121의19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	□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
<ul> <li>(감면내용)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·법인세를 감면</li> </ul>	○ (좌 동)
○ (감면적용 특구) - 기업도시, 지역개발사업구역 등	] ㅇ (좌 동)
<추 가>	- 평화경제특구
○ (감면율) 3년 100% + 2년 50% (사업시행자는 3년 50% + 2년 25%)	ㅇ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5.12.31.	ㅇ (좌 동)

- 〈 수정이유 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
- 〈시행시기〉 '24.1.1.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부터 적용

14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(조특법 §126의2)

정 부 안	 정 부 안			-	수 정	) 안	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				_	, -	사용금액 공제 신설
○ ( <b>공제대상</b> ) 총급여의 초과 사용금액	25%	Ò	(좌	동)			
○ ( <b>공제율</b> ) 결제수단·대	상별 차등	Ó				•	사용금액 소득공제
구 분	공제율			구	분		공제율
❶ 신용카드	15%	0	신용	카드			15%
<b>❷</b>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0	현금	영수증	·체크:	카드	30%
<ul><li>❸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 영화관람료 등<sup>*</sup></li><li>('23.4.1.~12.31. 사용분)</li></ul>	30% (40%)	€		공연.미 관람료 .1.~12.	. 등*		30%
<b>④</b> 전통시장 ('23.4.1.∼12.31. <b>사용분</b> )	40% (50%)		전통/ ('23.4.	시장 .1.~12.			40% (50%)
<b>6</b> 대중교통 ('23.1.1.~12.31. 사용분)	40% (80%)		대중고 ('23.1. <b>'24</b> 년	1.~12.	31. 사· <b>카드등</b>	용분) <b>사용금액</b>	40% (80%)
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민	적용		<i>-</i> 가는 증가는		1-0	1007	10%
○ (공제한도)				하는 시	사용금		의 105%를
총급여 7천만원	7천만원				<i>/</i> 급여 □	7천만원	7천만원
공제한도 이하	초과		공제한	년도		이하	초과
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 전통시장	250만원	-	기본	공제 현		300만원	250만원
공제 대중교통 300만원	200만원		추가 공제	전통. 대중. 도서공	교통	300만원	200만원
<u>한도   도서공연등   </u>			한도	'24년 <del>*</del>		100	 )만원
○ (적용기한) '25.12.31	•	0	(좌	동)			

〈 개정이유 〉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

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(조특법 §126의3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현금영수증사업자 <sup>*</sup> 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	□ 적용기한 폐지
*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	
<ul><li>(공제대상)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</li></ul>	)   0 (좌 동)
○ <b>(공제금액)</b> 종이발급 : 9.4원, 온라인발급 : 8.4원	
○ (적용기한) '25.12.31.	ㅇ (삭제)

〈 수정이유 〉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

[5] **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**(조특법 §133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* 합리화 *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	□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
<ul> <li>1개 과세기간 1억원,</li> <li>5개 과세기간* 2억원</li> <li>*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</li> </ul>	ㅇ (좌 동)
<ul> <li>다만,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</li> <li>하는 경우, 1개 과세기간 내</li> <li>양도로 봄(1억원 한도 적용)</li> </ul>	-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
<ul><li>●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</li></ul>	① 분필한 토지(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)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
② 토지(또는 지분) 일부 양도일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(또는 지분)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	② 토지(또는 지분) 일부 양도일 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(또는 지분)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

-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- 〈시행시기〉 '24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①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(주류면허법 §13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	□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
○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	○ (좌 동)
- 탁주 : 100만원 - 기타 발효주류 등 : 400만원	500만원
- 증류주, 주정 : 1천만원 - 맥주 : 2천만원	- (좌 동) - (좌 동)

### 국세기본법

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(국기법 §28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소멸시효 중단 사유	□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
○ 납부고지	
○ 독촉	○ (좌 동)
○ 교부청구	
○ 압류	
< 단서 신설 >	- 압류금지재산*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
	*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

〈 수정이유 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 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②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보완(국기법 §59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확대	□ 법인의 신청요건에 자산가액 추가
○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,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	ㅇ (좌 동)
○ <b>&lt;신설&gt; 수입금액</b> 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<b>법인</b>	<ul><li>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시행령</li><li>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</li></ul>

-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- 〈 시행시기 〉 '24.4.1.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- ③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(국기법 §81의13)

<b>현 행</b> 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	□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
○ 과세정보 요구는 <b>문서</b> *로 함 *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	<ul> <li>납세자의 인적사항, 과세정보의 사용목적,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</li> </ul>

- 〈 수정이유 〉 국회 심의결과 반영
-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(국기법 §85의15)

<b>현 행</b> 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	□ 청구요건 완화
○「조세범 처벌법」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	ㅇ (좌 동)
< 단서 신설 >	<ul> <li>다만,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</li> <li>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</li> <li>제외</li> </ul>

〈 수정이유 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### 국세징수법

①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(국정법 §56의3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 유가증권·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	□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
○ (압류방법) 예탁자등 <sup>*</sup>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<sup>**</sup> 에 압류의 뜻을 통지	ㅇ (좌 동)
* 예탁자등: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** 계좌관리기관등: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	
<추가>	- 명의개서대행회사등*에 압류의 뜻을 통지 * 예탁결제원, 하나은행, 국민은행
○ (압류효력)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·전자 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	○ (좌 동)
<추 가>	-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
<ul> <li>(압류효력 발생시기) 압류 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</li> </ul>	○ (좌 동)
< 추 가 >	- 압류통지서가 명의개서대행 회사등에 송달된 때
○ (압류 통지) 압류사실을 체납자 에게 통지	ㅇ (좌 동)

② **압류금지재산** 또는 **제3자 재산을 압류**한 경우 **압류 즉시 해제** (국정법 §57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압류 즉시해제 사유	□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
○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<b>전부</b> 가 <b>납부</b> 또는 <b>충당</b> 된 경우	
<ul><li>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</li></ul>	
<ul><li>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 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</li></ul>	○ (좌 동)
<ul> <li>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</li> </ul>	
< 신 설 >	○ <b>압류금지재산*</b> 을 압류한 경우 *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
	ㅇ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
<ul> <li>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</li> </ul>	ㅇ (좌 동)

〈 수정이유 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

③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(국정법 §71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공매보증 반환 대상	□ 대상 확대
○ 개찰 후: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	
<ul><li>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: 매수인</li></ul>	ㅇ (좌 동)
o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: <b>차순위 매수신청인</b>	
<ul> <li>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</li> <li>: 최고가 매수신청인</li> </ul>	

〈 수정이유 〉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

### 관세법

□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(관세법 §116의6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
	○ (요구주체) 과세정보 당사자
	○ (제공주체) 관세청
	○ (제공정보)「관세법」,「FTA관세법」,「조세 특례제한법」등에 따른 과세정보* *「관세법시행령」별표2의2에서 열거
	<ul> <li>(제공대상) 본인 또는 제3자*</li> <li>* ① 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</li> <li>② 세무사, 세무법인</li> <li>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・변호사</li> <li>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</li> </ul>
	○ (제공대행)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 에서 대행 가능
	○ (의무사항) 과세정보 유출 방지, 비밀유지,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
	○ (제재수단)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〈 수정이유 〉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

**〈 시행시기 〉** '24.7.1.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

②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(관세법 §224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□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	□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
제재 규정	제재 위임근거 마련
○ (제재사유)	
- 거짓·부정으로 등록한 경우	○ (좌 동)
-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	
경우 등	
○ (제재수단)	
- 등록 취소, 6개월 범위 내의	-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
업무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	등록 취소,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
	日   6/1, 一 円 11

〈 수정이유 〉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필요

**〈 시행시기 〉** '24.1.1.부터 시행

③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(관세법 §264의11 및 관세법 §266의2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
	○ (요구주체) 관세청
	<ul><li>(요구 받는 대상)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</li></ul>
	<ul><li>(요구정보) 마약류의 반입・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*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</li></ul>
	* 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②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③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
	□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
	<ul> <li>(수집정보)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반입 및 유통하는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의 위치정보</li> </ul>
	○ (의무사항)「위치정보법」에 따른 위치정보의 저장・보호・이용 및 파기 등을 준수
	○ (세부사항) 구체적인 수집 범위·방법·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

- 〈 수정이유 〉 마약밀수 단속 강화
- < 시행시기 > '24.1.1. 이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

4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제재 강화(관세법 §276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	□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
<ul> <li>○ 직무집행 거부・기피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→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/ul>	<ul> <li>○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li>→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/ul>
-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<b>거짓 진술</b> 하거나 <b>거부・기피</b> 한 자	
-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·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
- 서류 제출·보고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 명령을 불이행 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	
- 세관공무원의 <b>장부</b> 또는 <b>자료</b> 제시·제출요구를 거부한 자	

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(관세법 §327·§327의2 등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□ 한국관세정보원 설립·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
	○ (목적)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·관리
	○ (사업)
	-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·관리
	-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
	-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·조사·컨설팅·연구·교육·홍보
	-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	<ul> <li>(원장)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</li> </ul>
	<ul><li>(출연・보조) 시설・운영・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</li></ul>
	○ (지도·감독)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 가능
	<ul> <li>(적용법령)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</li> </ul>

〈 수정이유 〉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,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

**〈 시행시기 〉** '24.7.1.부터 시행

⑤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 (관세법 §327의3)

정 부 안	수 정 안
□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 및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	□ 관세청에 의한 제재 대상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제외
<ul> <li>(시정명령 근거) 관세정보</li> <li>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</li> <li>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</li> <li>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</li> <li>시정명령 가능</li> </ul>	<ul> <li>●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 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</li> <li>→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</li> </ul>
○ (처분 대상)	
- 사업자의 자격미달 (예: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)	
-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	(3) を)
- 비밀유지의무 위반	(좌 동)
- 설비·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	
- 관세청장의 지도·감독 위반	
- 시정명령* 위반	
*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	<ul> <li>*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→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